



가

[시행 2019. 5. 20.] [대통령령 제29758호, 2019. 5. 14.,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 043-870-5347

1 () 이 영은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6. 26.]

2 (가) 「국가표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0. 3. 15., 2010. 7. 12., 2013. 3. 23., 2014. 11. 19., 2015. 6. 30., 2017. 7. 26.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2. 행정안전부차관
3. 문화체육관광부차관
4. 농림축산식품부차관
5. 보건복지부차관
6. 환경부차관
7. 고용노동부차관
8. 국토교통부차관
9. 해양수산부차관
- 9의2. 중소벤처기업부차관
10.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1. 조달청장
12. 방위사업청장
13. 산림청장

[전문개정 2009. 6. 26.]

3 (가) ① 국가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삭제<2015. 6. 30.>

[전문개정 2009. 6. 26.]

4 () ① 법 제5조제7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된다. <개정 2013. 12. 11. >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1. >

1. 국무조정실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표준과학기술과 적합성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삭제<2018. 12. 11.>
 4. 삭제<2018. 12. 11.>
- ③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가기술표준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3. 12. 11. >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1. >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9. 6. 26.]

4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른 심의회의 위원 또는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2. 10.]

5 ()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6. 26.]

5 2()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의장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 6. 26.]

6 (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별 계획(이하 "소관 계획"이라 한다)을 종합하기 전에 소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관련 자료와 소관 계획의 제출일정 등을 정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표준의 수요자 및 생산자인 기관·단체의 의견을 고려하여 소관 계획을 작성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국가표준기본계획을 확정한 경우 이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30., 2018. 4. 17.>

[전문개정 2009. 6. 26.]

7 (가) 법 제7조에 따라 확정된 국가표준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고, 법 제8조에 따라 확정된 국가표준시행계획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고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6. 26.]

8 () ①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단위의 정의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단위는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3조에 따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하 "표준원"이라 한다)이 구현한다. <개정 2015. 6. 30., 2018. 12. 11.>

[전문개정 2009. 6. 26.]

[제목개정 2018. 12. 11.]

8 2()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단위는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한다.

1. 길이의 측정단위인 미터: m

2. 질량의 측정단위인 킬로그램: kg

3. 시간의 측정단위인 초: s

4. 전류의 측정단위인 암페어: A

5. 온도의 측정단위인 켈빈: K

6. 물질량의 측정단위인 몰: mol
 7. 광도의 측정단위인 칸델라: cd
- [본조신설 2015. 6. 30.]

9 () 법 제11조에 따라 기본단위의 조합 또는 기본단위와 다른 유도(誘導)단위의 조합에 의하여 형성되는 유도단위는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9. 5. 14.]

10 ()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국제단위계를 십진 배수나 분수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6. 26.]

11 삭제 <2018. 6. 12.>

12 (가)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이하 "국가교정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1. 국제기준에 맞는 품질관리체계를 구축·유지할 수 있을 것
 2. 측정장비 및 측정환경이 국제기준에 적합하고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遡及性)이 유지될 것
 3. 품질책임자, 기술책임자 및 기술요원을 확보할 것
 4. 그 밖에 품질관리체계 및 기술적인 요건 등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② 국가교정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이 보유·사용하는 측정기에 대하여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정이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국가교정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지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6. 26.]

13 ()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인증된 표준물질의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 체계 유지
2. 표준물질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의 수립과 그 밖에 인증제도의 운영
3. 표준물질의 안정적 공급방법의 마련
4. 표준물질에 관한 교육·홍보 등 보급사업

② 제1항에 따른 표준물질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6. 26.]

14 () ① 삭제 <2018. 6. 12.>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표준원으로 하여금 참조표준에 관한 측정데이터의 수집·축적 및 평가에 관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12.>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12.>

[전문개정 2009. 6. 26.]

15 (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가측정표준에 따른 측정기술의 정밀도 및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2. 소관 측정기기의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 유지사업
3. 중소기업의 국가측정표준 활용 장려사업

[전문개정 2009. 6. 26.]

15 2(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국가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한국산업표준(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및 작성방법에 적합할 것

2. 전자적 처리가 가능할 것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국가표준에 대하여 표준서식과의 적합성 및 다른 표준과의 중복성 여부 등의 확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완료 예정일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 결과를 반영하여 국가표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국가표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 6. 30.]

[종전 제15조의2는 제15조의4로 이동 <2015. 6. 30.>]

15 3(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국가표준 통합 정보시스템(이하 "국가표준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1. 국가표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 관리 및 정보의 제공

2. 국가표준 업무의 진행 현황 및 이력 관리

3. 국가표준 통계의 생성 및 관리

4. 그 밖에 국가표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표준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표준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 6. 30.]

[종전 제15조의3은 제15조의5로 이동 <2015. 6. 30.>]

15 4(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소관 적합성평가의 존속 필요성 및 절차 등(이하 "존속 필요성등"이라 한다)을 3년 주기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3년 주기가 시작되는 해의 2월 말까지 소관 적합성평가의 존속 필요성등에 대한 검토 예정 연도를 배분한 연차별 검토대상목록(이하 "검토대상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규제개혁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보한 검토대상목록을 종합 · 조정하여 해당 주기의 기관별 검토대상목록을 확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검토대상목록 중 해당 연도 검토대상 적합성평가의 존속 필요성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보고서(이하 "자체검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자체검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적합성평가의 존속 · 개선 · 통합 · 폐지 여부
 2. 적합성평가의 존속 · 개선 · 통합 · 폐지의 필요성 및 사유
 3. 적합성평가의 존속 · 개선 · 통합 · 폐지에 따른 경제적 · 사회적 영향
 4. 적합성평가의 존속 · 개선 · 통합 · 폐지에 따른 행정기구 · 인력 및 예산 소요
 5. 행정기관 · 민간단체 · 이해관계인 · 연구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결과
 6. 그 밖에 자체검토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사항
-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검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조사 ·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검토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관련 기관 · 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조사 ·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조사 · 연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전문기관 등에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11.]

[종전 제15조의4는 제15조의5로 이동 <2018. 12. 11.>]

15 5()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표준인증심사유형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8. 12. 11.>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인증심사유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1.>

[본조신설 2009. 6. 26.]

[제목개정 2018. 12. 11.]

[제15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5는 제15조의6으로 이동 <2018. 12. 11.>]

15 6()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표준인증심사유형을 도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1. 별표 5에 따른 심사유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법령에 규정하는 방법

2. 별표 5에 따른 심사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합성평가의 내용 및 방법 등을 해당 법령에 반영하여 규정하는 방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적합성평가에 도입한 심사유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심사유형을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1.>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적합성평가에 도입한 심사유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적합성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 및 절차 등이 국제기준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④ 둘 이상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제3항에 따라 정한 세부적인 적합성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을 통합하여 공동으로 고시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중앙행정기관이 하나인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본조신설 2009. 6. 26.]

[제목개정 2018. 12. 11.]

[제15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6은 제15조의7로 이동 <2018. 12. 11.>]

15 7(가) ①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0. 12. 20.>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및 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소관 적합성평가의 표시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적인 표시기준 및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④ 둘 이상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제3항에 따라 정한 세부적인 표시기준 및 방법을 통합하여 공동으로 고시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중앙행정기관이 하나인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본조신설 2009. 6. 26.]

[제15조의6에서 이동 <2018. 12. 11.>]

16 (·) ①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험 · 검사기관 인정제도의 확립을 위한 인정기구 및 운영기관을 지정 ·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술표준원을 제1항에 따른 인정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1.>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구는 시험 · 검사기관의 인정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준 및 절차 등이 국제기구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26.]

16 2() ①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심사결과를 인정받아 해당 심사를 생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 · 검사방법에 따른 심사결과서(이하 "심사결과서"라 한다)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결과서는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출일 전 최근 2년 이내에 시험 · 검사한 결과에 따른 심사결과서로 한정한다. <개정 2018. 12. 11.>

1. 다른 법령에 따른 적합성평가기관에서 발급받은 심사결과서

2. 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 · 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심사결과서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절차 외에 심사결과의 상호인정을 위한 세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세부절차를 정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6. 30.]

[제목개정 2018. 12. 11.]

16 3() ① 법 제26조의2제5항에 따른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제4항 각 호의 협의사항과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무역기술장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무역기술장벽에 따른 기업의 고충사항 발굴 및 대응에 관한 사항

2.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 · 협력에 관한 사항

3.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양자 및 다자간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협상과 협정의 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위원장은 제2항의 위원 외에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협의회는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17 (가)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그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한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출연금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6. 26.]

18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교정 및 관련 기기 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하여 「계량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측정의 정밀도 및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조사·연구, 자료 발간, 정보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업
 2. 교정방법과 교정절차의 개선 및 개발 등에 관한 사업
 3. 국가교정기관의 지정 평가에 관한 지원사업 및 숙련도시험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측정의 정밀도 및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 ② 협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을 신청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6. 26.]

19 ()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표준원,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1.>

[전문개정 2009. 6. 26.]

20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11., 2015. 6. 30., 2018. 6. 12.>

1.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지정·운영
2.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을 위한 사업
3. 삭제<2018. 6. 12.>
4.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품질관리체계 및 기술적인 요건 등에 관한 기준의 제정·고시
5. 제12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지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제정·고시
6. 제13조제2항에 따른 표준물질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제정·고시
- 6의2. 제14조제3항에 따른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제정·고시
7.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표준서식과의 적합성 확인, 다른 표준과의 중복성 확인 및 제3항에 따른 확인결과의 통보
8. 제15조의3에 따른 국가표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본조신설 2009. 6. 26.]

<제16494호, 1999. 7.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6851호, 2000. 6. 23.>(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

1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본문중 "계량 및 측정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측정기기교정협회"를 "계량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계량측정협회"로 한다.

② 및 ③생략

3 생략

<제20678호, 2008. 2. 29.>(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7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2. 국방부장관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

5. 지식경제부장관

6. 보건복지가족부장관

7. 환경부장관

8. 노동부장관

9. 국토해양부장관

10.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제4조제2항 전단 · 제4항, 제6조제1항 · 제2항, 제7조, 제11조제1항 · 제2항, 제12조제1항제4호 · 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제2항 · 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86>까지 생략

<제21569호, 2009. 6. 26.>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2075호, 2010. 3. 15.>(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건복지부차관

부터 <187>까지 생략

<제22269호, 2010. 7. 12.>(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고용노동부차관

부터 <136>까지 생략

<제22534호, 2010. 12.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4442호, 2013. 3. 2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12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차관

2. 안전행정부차관

3. 문화체육관광부차관

4. 농림축산식품부차관

5. 보건복지부차관

6. 환경부차관

7. 고용노동부차관

8. 국토교통부차관

9. 방위사업청장

10.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 제2항, 제7조, 제11조제1항 · 제2항, 제1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 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5조의3제2항, 제15조의4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⑪부터 <92>까지 생략

<제24955호, 2013. 12. 11.>(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 생략

3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 제3항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표준원장"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16조제2항 및 제19조 중 "기술표준원"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으로 한다.

⑤부터 까지 생략

4 생략

<제25751호, 2014. 11. 19.>(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5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5>까지 생략

<286>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자치부차관

<287>부터 <418>까지 생략

<제26363호, 2015. 6. 30.>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6703호, 2015. 12. 10.>(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광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8212호, 2017. 7. 26.>(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4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2. 행정안전부차관

9의2. 중소벤처기업부차관

⑤부터 까지 생략

<제28799호, 2018. 4. 17.>(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1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6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⑥부터 까지 생략

7 생략

<제28960호, 2018. 6. 12.>

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9345호, 2018. 12. 11.>

1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적합성평가의 존속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적합성 평가의 존속 필요성 및 절차 등에 대한 검토부터 적용한다.

<제29758호, 2019. 5. 14.>

1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령의 개정)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를 삭제한다.

1. 국제적으로 국제단위계(SI)와 함께 사용이 허용된 단위

명칭	기호	SI단위로 나타낸 값
분	min	1 min = 60 s
시	h	1 h = 60 min = 3600 s
일	d	1 d = 24 h = 86 400 s
천문단위	au	1 au = 149 597 870 700 m
도	°	$1^\circ = (\pi/180) \text{ rad}$
분	'	$1' = (1/60)^\circ = (\pi/10800) \text{ rad}$
초	"	$1'' = (1/60)' = (\pi/648000) \text{ rad}$
헥타르	ha	$1 \text{ ha} = 1 \text{ hm}^2 = 10^4 \text{ m}^2$
리터	l, L	$1 l = 1 L = 1 \text{ dm}^3 = 10^3 \text{ cm}^3 = 10^{-3} \text{ m}^3$
톤	t	$1 t = 10^3 \text{ kg}$
돌턴	Da	$1 \text{ Da} = 1.660\,539\,040(20) \times 10^{-27} \text{ kg}$
전자볼트	eV	$1 \text{ eV} = 1.602\,176\,634 \times 10^{-19} \text{ J}$
네퍼	Np	
벨	B	
데시벨	dB	

별표 2 제4호의 칼로리란 다음에 해리란부터 옹스트롬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리	M	$1 M = 1852 \text{ m}$
노트	kn	$1 \text{ kn} = 1 \text{ 해리 매 시} = (1852/3600) \text{ m/s}$
바	bar	$1 \text{ bar} = 0.1 \text{ MPa} = 100 \text{ kPa} = 1000 \text{ hPa} = 10^5 \text{ Pa}$
옹스트롬	Å	$1 \text{ Å} = 0.1 \text{ nm} = 100 \text{ pm} = 10^{-10} \text{ m}$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5. 14.>

기본단위의 정의(제8조제1항 관련)

1. "초(s)"는 시간의 단위로서, 세슘-133 원자의 바닥상태의 전이 주파수(진동수) ν_{C_6} 를 Hz 단위로 나타낼 때 $9\,192\,631\,770$ 이 된다. 여기서 Hz는 s^{-1} 과 같은 단위이다.
2. "미터(m)"는 길이의 단위로서,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 c 를 $m\ s^{-1}$ 단위로 나타낼 때 $299\,792\,458$ 이 된다.
3. "킬로그램(kg)"은 질량의 단위로서, 플랑크 상수 h 를 J s 단위로 나타낼 때 $6.626\,070\,15 \times 10^{-34}$ 이 된다. 여기서 J s는 $kg\ m^2\ s^{-1}$ 과 같은 단위이다.
4. "암페어(A)"는 전류의 단위로서, 기본 전하 e 를 C 단위로 나타낼 때 $1.602\,176\,634 \times 10^{-19}$ 이 된다. 여기서 C는 A s와 같은 단위이다.
5. "켈빈(K)"은 온도의 단위로서, 볼츠만 상수 k 를 J K $^{-1}$ 단위로 나타낼 때 $1.380\,649 \times 10^{-23}$ 이 된다. 여기서 J K $^{-1}$ 은 $kg\ m^2\ s^{-2}\ K^{-1}$ 과 같은 단위이다.
6. "몰(mol)"은 물질량의 단위로서, $6.022\,140\,76 \times 10^{23}$ 개의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이 숫자는 아보가드로 상수 N_A 를 mol $^{-1}$ 단위로 나타낼 때 정해지는 수치로서 아보가드로 수라고 부른다. 어떤 계의 물질량(기호: n)은 명시된 특정 구성요소들의 수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특정 구성요소들이란 원자, 분자, 이온, 전자, 그 외의 입자 또는 그런 입자들의 특정한 집합체가 될 수 있다.
7. "칸델라(cd)"는 광도의 단위로서, 주파수 540×10^{12} Hz의 단색광 시감효능 K_{cd} 를 lm W $^{-1}$ 단위로 나타낼 때 683이 된다. 여기서 lm W $^{-1}$ 은 cd sr W $^{-1}$ 또는 cd sr kg $^{-1}$ m $^{-2}$ s 3 과 같은 단위이다.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9. 5. 14.>
유도단위(제9조 관련)

1. 고유한 명칭과 기호를 가진 유형

측정대상	유도단위 명칭	기호	기본단위로 표시	기본단위와 다른 유도단위로 표시
가. 평면각	라디안	rad	m/m	
나. 입체각	스테라디안	sr	m^2/m^2	
다. 진동수, 주파수	헤르츠	Hz	s^{-1}	
라. 힘	뉴턴	N	$kg \cdot m \cdot s^{-2}$	
마. 압력, 응력(應力)	파스칼	Pa	$kg \cdot m^{-1} \cdot s^{-2}$	
바. 에너지, 일, 열량	줄	J	$kg \cdot m^2 \cdot s^{-2}$	$N \cdot m$
사. 일률(率), 동력, 전력, 방사선 속(放射線束), 복사선속	와트	W	$kg \cdot m^2 \cdot s^{-3}$	J/s
아. 전하, 전하량	쿨롬	C	A · s	
자. 전위차, 전압, 기전력	볼트	V	$kg \cdot m^2 \cdot s^{-3} \cdot A^{-1}$	W/A
차. 전기용량, 정전용량	파럿	F	$kg^{-1} \cdot m^{-2} \cdot s^4 \cdot A^2$	C/V
카. 전기저항	옴	Ω	$kg \cdot m^2 \cdot s^{-3} \cdot A^{-2}$	V/A
타. 컨덕턴스(전기전도율)	지멘스	S	$kg^{-1} \cdot m^{-2} \cdot s^3 \cdot A^2$	A/V
파. 자기선속	웨버	Wb	$kg \cdot m^2 \cdot s^{-2} \cdot A^{-1}$	V · s
하. 자기선속밀도	테슬라	T	$kg \cdot s^{-2} \cdot A^{-1}$	Wb/ m^2
거. 인덕턴스(유도계수)	헨리	H	$kg \cdot m^2 \cdot s^{-2} \cdot A^{-2}$	Wb/A
너. 섭씨온도	섭씨도	°C	K	
더. 광선속	루멘	lm	cd · sr	cd · sr
러. 조도, 광조도, 조명도	럭스	lx	cd · sr · m^{-2}	lm/ m^2
머. (방사성 핵종의) 방사능	베크렐	Bq	s^{-1}	
버. 흡수선량(단위 질량당 흡수된 방사선 에너지), 커마(단위 질량당 흡수된 전하입자의 운동에너지)	그레이	Gy	$m^2 \cdot s^{-2}$	J/kg
서. 선량당량(인체의 방사선 흡수선량), 주변선량당량, 방향선량당량, 개인선량당량	시버트	Sv	$m^2 \cdot s^{-2}$	J/kg
어. 측매 활성도	카탈	kat	$mol \cdot s^{-1}$	

비고

- 라디안은 평면각을 측정하는 단위이다. 1 라디안은 원에서 원의 반지름과 같은 길이의 원호에 대응하는 중심각이다. 라디안은 위상각(位相角)의 단위로도 사용된다. 주기적 현상에서 2π 라디안은 1 주기에 해당한다.

2. 스테라디안은 입체각을 측정하는 단위이다. 1 스테라디안은 구에서 구의 반지름의 제곱과 같은 크기의 구 표면적에 대응하는 중심 입체각이다.
3. 헤르츠와 베크렐은 같은 차원의 단위지만, 헤르츠는 주기적 현상의 단위로 사용되며 베크렐은 방사성 핵종의 방사능의 단위로 사용된다.
4. 섭씨도는 섭씨온도를 나타낼 때 사용된다. 섭씨도와 켈빈의 온도 눈금 간격은 동일하다.

2. 기본단위로 표시된 유형

측정대상	유도단위
가. 넓이	m^2
나. 부피	m^3
다. 속도, 속력	$m s^{-1}$
라. 가속도	$m s^{-2}$
마. 파동수	m^{-1}
바. 밀도, 질량밀도	$kg m^{-3}$
사. 표면밀도	$kg m^{-2}$
아. 비(比) 부피(단위 질량당 부피)	$m^3 kg^{-1}$
자. 전류밀도	$A m^{-2}$
차. 자기장 세기	$A m^{-1}$
카. 물질량농도	$mol m^{-3}$
타. 질량농도	$kg m^{-3}$
파. 휘도(輝度)	$cd m^{-2}$

비고: 위에 열거된 유도단위는 기본단위로 표시된 유형의 대표적 사례이다.

3. 고유한 명칭과 기호를 가진 유도단위를 포함하는 유형

측정대상	유도단위 명칭	기호 (기본단위와 다른 유도단위로 표시)	기본단위로 표시
가. 점성도	파스칼 초	$Pa s$	$kg m^{-1} s^{-1}$
나. 힘의 모멘트 (moment of force)	뉴턴 미터	$N m$	$kg m^2 s^{-2}$
다. 표면장력	뉴턴 매 미터	$N m^{-1}$	$kg s^{-2}$
라. 각속도, 각주파수	라디안 매 초	$rad s^{-1}$	s^{-1}
마. 각각속도	라디안 매 제곱초	$rad s^{-2}$	s^{-2}
바. 열속밀도, 복사	와트 매 제곱미터	$W m^{-2}$	$kg s^{-3}$

조도			
사. 열용량, 엔트로피(entropy)	줄 매 켈빈	$J K^{-1}$	$kg m^2 s^{-2} K^{-1}$
아. 비열용량, 비엔트로피	줄 매 켈빈 매 킬로그램	$J K^{-1} kg^{-1}$	$m^2 s^{-2} K^{-1}$
자. 비에너지	줄 매 킬로그램	$J kg^{-1}$	$m^2 s^{-2}$
차. 열전도도	와트 매 미터 매 켈빈	$W m^{-1} K^{-1}$	$kg m s^{-3} K^{-1}$
카. 에너지 밀도	줄 매 세제곱미터	$J m^{-3}$	$kg m^{-1} s^{-2}$
타. 전기장 세기	볼트 매 미터	$V m^{-1}$	$kg m s^{-3} A^{-1}$
파. 전하밀도	쿨롬 매 세제곱미터	$C m^{-3}$	$A s m^{-3}$
하. 표면 전하밀도	쿨롬 매 제곱미터	$C m^{-2}$	$A s m^{-2}$
거. 전기선속밀도, 전기변위	쿨롬 매 제곱미터	$C m^{-2}$	$A s m^{-2}$
녀. 유전율(誘電率)	페럿 매 미터	$F m^{-1}$	$kg^{-1} m^{-3} s^4 A^2$
더. 투자율(透磁率)	헨리 매 미터	$H m^{-1}$	$kg m s^{-2} A^{-2}$
러. 몰에너지	줄 매 몰	$J mol^{-1}$	$kg m^2 s^{-2} mol^{-1}$
머. 몰엔트로피, 몰열용량	줄 매 켈빈 매 몰	$J K^{-1} mol^{-1}$	$kg m^2 s^{-2} mol^{-1} K^{-1}$
버. (x 선 및 γ 선의) 조사선량	쿨롬 매 킬로그램	$C kg^{-1}$	$A s kg^{-1}$
서. 흡수선량률	그레이 매 초	$Gy s^{-1}$	$m^2 s^{-3}$
어. 복사도	와트 매 스테라디안	$W sr^{-1}$	$kg m^2 s^{-3}$
저. 복사휘도	와트 매 스테라디안 매 제곱미터	$W sr^{-1} m^{-2}$	$kg s^{-3}$
처. 촉매활성도 농도	카탈 매 세제곱미터	$kat m^{-3}$	$mol s^{-1} m^{-3}$

비고: 위에 열거된 유도단위는 고유한 명칭과 기호를 가진 유도단위를 포함하는 유형의 대표적 사례이다.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삭제 <2019. 5. 14.>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9. 5. 14.>

국제단위계의 접두어(제10조 관련)

인자	접두어	기호	인자	접두어	기호
10^1	데카	da	10^{-1}	데시	d
10^2	헥토	h	10^{-2}	센티	c
10^3	킬로	k	10^{-3}	밀리	m
10^6	메가	M	10^{-6}	마이크로	μ
10^9	기가	G	10^{-9}	나노	n
10^{12}	테라	T	10^{-12}	피코	p
10^{15}	페타	P	10^{-15}	펨토	f
10^{18}	엑사	E	10^{-18}	아토	a
10^{21}	제타	Z	10^{-21}	젭토	z
10^{24}	요타	Y	10^{-24}	욥토	y

비고

- 국제단위계의 기본단위로서 질량을 측정하는 단위인 킬로그램(kg)은 접두어 또는 기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앞에는 접두어 또는 기호를 붙이지 않는다.
- 질량 단위에 접두어를 붙이는 경우에는 그램(g) 앞에 접두어 또는 기호를 붙여 표시한다. 예를 들어, 10^{-6} kg은 밀리그램(mg)으로 표시하고, 마이크로 킬로그램(μ kg)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8. 12. 11.>

표준인증심사유형(제15조의5제1항 관련)

1. 에이(A) 심사유형

가. 개요

제품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의 책임으로 해당 제품이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제품시험 등을 통하여 확인하거나 시험·검사기관의 확인을 받아 해당 요건에 적합함을 선언(이하 "자기 적합성 선언"이라 한다)하는 심사유형이다.

나. 적합성평가의 방법

제조업자등은 시험·검사기관을 통한 시험 여부 및 제품등록 여부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적합성평가를 한다.

- 1) 제조업자등이 시험·검사기관에서 시험을 받은 후 소관 행정기관 또는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 제품을 등록하는 방법
- 2) 제조업자등이 제품의 등록절차 없이 시험·검사기관에서 시험만 받는 방법
- 3) 제조업자등이 직접 시험한 후 소관 행정기관 또는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 제품을 등록하는 방법
- 4) 제조업자등이 제품의 등록절차 없이 직접 시험만 하는 방법

다. 적합성평가의 표시

제조업자등은 자기 적합성 선언을 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인증 등 해당 적합성평가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라. 사후관리

적합성평가기관에서 실시하는 적합성평가의 사후관리는 없으나, 자기 적합성 선언을 한 제품이 시장에서 혼란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의 소관 행정기관 또는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조사 활동 등의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2. 비(B) 심사유형

가. 개요

적합성평가기관이 제품에 대한 설계평가 및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통하여 해당 제품의 품질 등이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평가하여 적합성평

가 결과를 도출하는 심사유형이다.

나. 적합성평가의 방법

제품에 대한 설계평가 및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 1) 제품에 대한 설계승인을 포함한 설계평가 및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하는 방법
- 2) 제품에 대한 설계승인을 포함하지 않는 설계평가 및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하는 방법
- 3) 설계평가를 따로 하지 않고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하는 방법

다. 적합성평가의 신청

- 1) 제조업자등은 적합성평가기관에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적합성평가에 필요한 신청 서류를 제출한다.
- 2) 제조업자등은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위한 시료(試料)를 채취하여 적합성 평가기관 또는 적합성평가기관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수량만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적합성평가기관의 업무

- 1) 적합성평가기관은 제조업자등이 신청한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 서류의 반려 여부나 보완 필요성 여부 등을 먼저 검토한다.
- 2) 적합성평가기관은 제품의 기술설계가 관련 법령에서 설계와 관련하여 제품에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고 평가한다. 다만, 나목3)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적합성평가기관은 제품의 기술설계가 관련 법령에서 설계와 관련하여 제품에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설계승인이 되었음을 제조업자등에게 통보하거나 설계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 나) 적합성평가기관은 제품의 기술설계가 관련 법령에서 설계와 관련하여 제품에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조업자등에게 통보한다.
- 3) 적합성평가기관은 제품이 관련 법령에서 제품에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한다.
 - 가) 적합성평가기관은 제품이 관련 법령에서 제품에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가 해당 요건에 충족됨을 제조업자등에게 통보하거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나) 적합성평가기관은 제품이 관련 법령에서 제품에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조업자등에게 통보한다.

4) 적합성평가기관은 1)부터 3)까지의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신청한 제품에 대하여 적합성평가가 적합하게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증명서(이하 "적합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마.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항의 변경

- 1) 제조업자등은 적합성평가가 적합하게 완료된 제품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의 충족 여부 또는 발급된 적합증명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으면 적합성평가기관에 그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2) 적합성평가기관은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발급한 적합증명서에 대하여 유효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결과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

바. 적합성평가의 표시

제조업자등은 적합성평가기관으로부터 신청한 제품의 적합성평가가 적합하게 완료되었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인증 등 해당 적합성평가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사. 사후관리

적합성평가기관에서 실시하는 적합성평가의 사후관리는 없으나, 제품이 시장에서 혼란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의 소관 행정기관 또는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조사활동 등의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3. 씨(C) 심사유형

가. 개요

적합성평가기관이 제품에 대한 설계평가 및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통하여 해당 제품의 품질 등이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여 적합성 평가 결과를 도출하고, 제품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한 후에 제품시험 또는 제품 검사를 통하여 사후관리를 하는 심사유형이다.

나. 적합성평가의 방법

제품에 대한 설계평가 및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방법으로 한다.

- 1) 제품에 대한 설계승인을 포함한 설계평가 및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하는 방법
- 2) 제품에 대한 설계승인을 포함하지 않는 설계평가 및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하는 방법
- 3) 설계평가를 따로 하지 않고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하는 방법

다. 적합성평가의 신청

- 1) 제조업자등은 적합성평가기관에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적합성평가에 필요한 신청 서류를 제출한다.
- 2) 제조업자등은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여 적합성평가기관 또는 적합성평가기관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수량만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적합성평가기관의 업무

- 1) 적합성평가기관은 제조업자등이 신청한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 서류의 반려 여부나 보완 필요성 여부 등을 먼저 검토한다.
- 2) 적합성평가기관은 제품의 기술설계가 관련 법령에서 설계와 관련하여 제품에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고 평가한다. 다만, 나목3)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적합성평가기관은 제품의 기술설계가 관련 법령에서 설계와 관련하여 제품에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설계승인이 되었음을 제조업자등에게 통보하거나 설계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 나) 적합성평가기관은 제품의 기술설계가 관련 법령에서 설계와 관련하여 제품에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조업자등에게 통보한다.
- 3) 적합성평가기관은 제품이 관련 법령에서 제품에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한다.
 - 가) 적합성평가기관은 제품이 관련 법령에서 제품에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가 해당 요건에 충족됨을 제조업자등에게 통보하거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나) 적합성평가기관은 제품이 관련 법령에서 제품에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조업자등에게 통보한다.
- 4) 적합성평가기관은 1)부터 3)까지의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신청한 제품에 대하여 적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마.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항의 변경

- 1) 제조업자등은 적합성평가가 적합하게 완료된 제품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의 충족 여부 또는 발급된 적합증명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으면 적합성평가기관에 그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2) 적합성평가기관은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발급한 적합증명서에 대하여 유효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결과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

바. 적합성평가의 표시

- 1) 제조업자등은 적합성평가기관으로부터 신청한 제품의 적합성평가가 적합하게 완료되었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인증 등 해당 적합성평가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2) 제조업자등은 해당 제품의 적합성평가가 적합하게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출고되는 모든 생산로트(Lot)에 대하여 적합성평가기관에 의한 출고 전 시험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출고 전 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났음이 확인된 로트에만 인증 등 해당 적합성평가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사. 사후관리

- 1) 적합성평가기관은 제품에 대한 적합성평가가 적합하게 완료된 후에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통하여 사후관리를 한다.
- 2)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 가) 출고되는 모든 생산로트에 대하여 출고 전 시험을 하는 방법
 - 나) 적합성평가가 적합하게 완료된 제품에 대한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하는 방법
- 3) 적합성평가기관은 적합성평가가 적합하게 완료된 제품이 사후관리를 통하여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조업자등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고, 그 조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결과를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적합성평가가 적합하게 완료된 제품이 시장에서 혼란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의 소관 행정기관 또는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조사활동 등의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4. 디(D) 심사유형

가. 개요

적합성평가기관이 제품에 대한 설계평가 및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통하여 해당 제품의 품질 등이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고, 공장의 제조 및 품질관리 능력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적절한 품질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공장심사를 하여 적합성평가 결과를 도출하며, 제품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한 후에 공장심사를 통하여 사후관리를 하는 심사유형이다.

나. 적합성평가의 방법

1) 제품에 대한 설계평가 및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가) 제품에 대한 설계승인을 포함한 설계평가 및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하는 방법

나) 제품에 대한 설계승인을 포함하지 않는 설계평가 및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하는 방법

다) 설계평가를 따로 하지 않고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하는 방법

2) 공장심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가) 공장의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전체심사

나) 공장의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일부심사

다. 적합성평가의 신청

1) 제조업자등은 해당 적합성평가기관에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적합성평가에 필요한 신청 서류를 제출한다.

2) 제조업자등은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여 적합성평가기관 또는 적합성평가기관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수량만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적합성평가기관의 업무

1) 적합성평가기관은 제조업자등이 신청한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 서류의 반려 여부나 보완 필요성 여부 등을 먼저 검토한다.

2) 적합성평가기관은 제품의 기술설계가 관련 법령에서 설계와 관련하여 제품에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고 평가한다. 다만, 나록1)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적합성평가기관은 제품의 기술설계가 관련 법령에서 설계와 관련하여 제품에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설계승인이 되었음을 제조업

- 자동에게 통보하거나 설계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 나) 적합성평가기관은 제품의 기술설계가 관련 법령에서 설계와 관련하여 제품에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조업자등에게 통보한다.
- 3) 적합성평가기관은 제품이 관련 법령에서 제품에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한다.
- 가) 적합성평가기관은 제품이 관련 법령에서 제품에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가 해당 요건에 충족됨을 제조업자등에게 통보하거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나) 적합성평가기관은 제품이 관련 법령에서 제품에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조업자등에게 통보한다.
- 4) 적합성평가기관은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제조 및 품질관리 능력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적절한 품질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공장심사를 한다.
- 가) 공장심사에는 제조업자등의 공장에 대한 현장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 나) 제조업자등은 공장심사를 하기 전에 적합성평가기관의 요구에 따라 공장심사에 필요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5) 인증기관은 1)부터 4)까지의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신청한 제품에 대하여 적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마.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항의 변경

- 1) 제조업자등은 적합성평가가 적합하게 완료된 제품이나 그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의 충족 여부 또는 발급된 적합증명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으면 적합성평가기관에 그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2) 적합성평가기관은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발급한 적합증명서에 대하여 유효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결과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

바. 적합성평가의 표시

- 1) 제조업자등은 적합성평가기관으로부터 신청한 제품의 적합성평가가 적합하게 완료되었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인증 등 해당 적합성평가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2) 제조업자등은 해당 제품의 적합성평가가 적합하게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출고되는 모든 생산로트에 대하여 적합성평가기관에 의한

출고 전 시험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출고 전 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났음이 확인된 로트에만 인증 등 해당 적합성평가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사. 사후관리

- 1) 적합성평가기관은 제품에 대한 적합성평가가 적합하게 완료된 후에 공장심사를 통하여 사후관리를 한다.
- 2) 공장심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 가) 공장의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전체심사
 - 나) 공장의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일부심사
- 3) 적합성평가기관은 적합성평가가 적합하게 완료된 제품이 사후관리를 통하여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조업자등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고, 그 조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결과를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적합성평가가 적합하게 완료된 제품이 시장에서 혼란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의 소관 행정기관 또는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조사활동 등의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5. 이(E) 심사유형

가. 개요

적합성평가기관이 제품에 대한 설계평가 및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통하여 해당 제품의 품질 등이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고, 공장의 제조 및 품질관리 능력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적절한 품질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공장심사를 하여 적합성평가 결과를 도출하며, 제품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한 후에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통하여 사후관리를 하는 심사유형이다.

나. 적합성평가의 방법

- 1) 제품에 대한 설계평가 및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 가) 제품에 대한 설계승인을 포함한 설계평가 및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하는 방법
 - 나) 제품에 대한 설계승인을 포함하지 않는 설계평가 및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하는 방법
 - 다) 설계평가를 따로 하지 않고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하는 방법

2) 공장심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 가) 공장의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전체심사
- 나) 공장의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일부심사

다. 적합성평가의 신청

- 1) 제조업자등은 적합성평가기관에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적합성평가에 필요한 신청 서류를 제출한다.
- 2) 제조업자등은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여 적합성평가기관 또는 적합성평가기관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수량만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적합성평가기관의 업무

- 1) 적합성평가기관은 제조업자등이 신청한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 서류의 반려 여부나 보완 필요성 여부 등을 먼저 검토한다.
- 2) 적합성평가기관은 제품의 기술설계가 관련 법령에서 설계와 관련하여 제품에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고 평가한다. 다만, 나록1)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적합성평가기관은 제품의 기술설계가 관련 법령에서 설계와 관련하여 제품에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설계승인이 되었음을 제조업자등에게 통보하거나 설계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 나) 적합성평가기관은 제품의 기술설계가 관련 법령에서 설계와 관련하여 제품에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조업자등에게 통보한다.
- 3) 적합성평가기관은 제품이 관련 법령에서 제품에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한다.
 - 가) 적합성평가기관은 제품이 관련 법령에서 제품에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가 해당 요건에 충족됨을 제조업자등에게 통보하거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나) 적합성평가기관은 제품이 관련 법령에서 제품에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조업자등에게 통보한다.
- 4) 적합성평가기관은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제조 및 품질관리 능력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적절한 품질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공장심사를 한다.
 - 가) 공장심사에는 제조업자등의 공장에 대한 현장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 나) 제조업자등은 공장심사를 하기 전에 적합성평가기관의 요구에 따라 공장심

사에 필요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적합성평가기관은 1)부터 4)까지의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신청한 제품에 대하여 적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마.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항의 변경

- 1) 제조업자등은 적합성평가가 적합하게 완료된 제품이나 그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의 충족 여부 또는 발급된 적합증명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으면 적합성평가기관에 그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2) 적합성평가기관은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발급한 적합증명서에 대하여 유효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결과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

바. 적합성평가의 표시

- 1) 제조업자등은 적합성평가기관으로부터 신청한 제품의 적합성평가가 적합하게 완료되었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인증 등 해당 적합성평가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2) 제조업자등은 해당 제품의 적합성평가가 적합하게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출고되는 모든 생산로트에 대하여 적합성평가기관에 의한 출고 전 시험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출고 전 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났음이 확인된 로트에만 인증 등 해당 적합성평가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사. 사후관리

- 1) 적합성평가기관은 제품에 대한 적합성평가가 적합하게 완료된 후에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 및 공장심사를 통하여 사후관리를 한다.
- 2)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 가) 출고되는 모든 생산로트에 대하여 출고 전 시험을 하는 방법
 - 나) 적합성평가가 적합하게 완료된 제품에 대한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하는 방법
- 3) 공장심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 가) 공장의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전체심사
 - 나) 공장의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일부심사
- 4) 적합성평가기관은 적합성평가가 적합하게 완료된 제품이 사후관리를 통하여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조업자등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고, 그 조치가 적절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결과를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적합성평가가 적합하게 완료된 제품이 시장에서 혼란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의 소관 행정기관 또는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조사활동 등의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6. 에프(F) 심사유형

가. 개요

적합성평가기관이 제품에 대한 설계평가 및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통하여 해당 제품의 품질 등이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고, 공장의 제조 및 품질관리 능력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적절한 품질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공장심사를 하여 적합성평가 결과를 도출하며, 제품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한 후에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통하여 사후관리를 하는 심사유형이다.

나. 적합성평가의 방법

- 1) 제품에 대한 설계평가 및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 가) 제품에 대한 설계승인을 포함한 설계평가 및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하는 방법
 - 나) 제품에 대한 설계승인을 포함하지 않는 설계평가 및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하는 방법
 - 다) 설계평가를 따로 하지 않고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하는 방법
- 2) 공장심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 가) 공장의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전체심사
 - 나) 공장의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일부심사

다. 적합성평가의 신청

- 1) 제조업자등은 적합성평가기관에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적합성평가에 필요한 신청 서류를 제출한다.
- 2) 제조업자등은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여 적합성평가기관 또는 적합성평가기관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수량만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적합성평가기관의 업무

- 1) 적합성평가기관은 제조업자등이 신청한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 서류의 반려 여부나 보완 필요성 여부 등을 먼저 검토한다.
- 2) 적합성평가기관은 제품의 기술설계가 관련 법령에서 설계와 관련하여 제품에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고 평가한다. 다만, 나목1)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적합성평가기관은 제품의 기술설계가 관련 법령에서 설계와 관련하여 제품에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설계승인이 되었음을 제조업자등에게 통보하거나 설계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 나) 적합성평가기관은 제품의 기술설계가 관련 법령에서 설계와 관련하여 제품에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조업자등에게 통보한다.
- 3) 적합성평가기관은 제품이 관련 법령에서 제품에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한다.
 - 가) 적합성평가기관은 제품이 관련 법령에서 제품에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가 해당 요건에 충족됨을 제조업자등에게 통보하거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나) 적합성평가기관은 제품이 관련 법령에서 제품에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조업자등에게 통보한다.
- 4) 적합성평가기관은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제조 및 품질관리 능력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적절한 품질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공장심사를 한다.
 - 가) 공장심사에는 제조업자등의 공장에 대한 현장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 나) 제조업자등은 공장심사를 하기 전에 적합성평가기관의 요구에 따라 공장심사에 필요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5) 적합성평가기관은 1)부터 4)까지의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신청한 제품에 대하여 적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마.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항의 변경

- 1) 제조업자등은 적합성평가가 적합하게 완료된 제품이나 그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의 충족 여부 또는 발급된 적합증명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으면 적합성평가기관에 그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2) 적합성평가기관은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발급한 적합증명서에 대하여 유효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결과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

바. 적합성평가의 표시

- 1) 제조업자등은 적합성평가기관으로부터 신청한 제품의 적합성평가가 적합하게 완료되었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인증 등 해당 적합성평가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2) 제조업자등은 해당 제품의 적합성평가가 적합하게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출고되는 모든 생산로트에 대하여 적합성평가기관에 의한 출고 전 시험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출고 전 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났음이 확인된 로트에만 인증 등 해당 적합성평가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사. 사후관리

- 1) 적합성평가기관은 제품에 대한 적합성평가가 적합하게 완료된 후에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통하여 사후관리를 한다.
- 2)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 가) 출고되는 모든 생산로트에 대하여 출고 전 시험을 하는 방법
 - 나) 적합성평가가 적합하게 완료된 제품에 대한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하는 방법
- 3) 적합성평가기관은 적합성평가가 적합하게 완료된 제품이 사후관리를 통하여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조업자등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고, 그 조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결과를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적합성평가가 적합하게 완료된 제품이 시장에서 혼란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의 소관 행정기관 또는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조사활동 등의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7. 지(G) 심사유형

가. 개요

적합성평가기관이 제품에 대한 설계평가 및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통하여 해당 제품의 품질 등이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고, 공장의 제조 및 품질관리 능력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적절한 품질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공장심사를 하여 적합성평가결과를 도출하는 심사유형이다.

나. 적합성평가의 방법

1) 제품에 대한 설계평가 및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가) 제품에 대한 설계승인을 포함한 설계평가 및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하는 방법

나) 제품에 대한 설계승인을 포함하지 않는 설계평가 및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하는 방법

다) 설계평가를 따로 하지 않고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하는 방법

2) 공장심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가) 공장의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전체심사

나) 공장의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일부심사

다. 적합성평가의 신청

1) 제조업자등은 적합성평가기관에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적합성평가에 필요한 신청 서류를 제출한다.

2) 제조업자등은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여 적합성평가기관 또는 적합성평가기관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수량만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적합성평가기관의 업무

1) 적합성평가기관은 제조업자등이 신청한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 서류의 반려 여부나 보완 필요성 여부 등을 먼저 검토한다.

2) 적합성평가기관은 제품의 기술설계가 관련 법령에서 설계와 관련하여 제품에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고 평가한다. 다만, 나목1)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적합성평가기관은 제품의 기술설계가 관련 법령에서 설계와 관련하여 제품에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설계승인이 되었음을 제조업자등에게 통보하거나 설계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나) 적합성평가기관은 제품의 기술설계가 관련 법령에서 설계와 관련하여 제품에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조업자등에게 통보한다.

3) 적합성평가기관은 제품이 관련 법령에서 제품에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한다.

가) 적합성평가기관은 제품이 관련 법령에서 제품에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가 해당 요건에 충족됨을 제조업자등에게 통보하거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나) 적합성평가기관은 제품이 관련 법령에서 제품에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조업자등에게 통보한다.

4) 적합성평가기관은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제조 및 품질관리 능력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적절한 품질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공장심사를 한다.

가) 공장심사에는 제조업자등의 공장에 대한 현장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 제조업자등은 공장심사를 하기 전에 적합성평가기관의 요구에 따라 공장심사에 필요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적합성평가기관은 1)부터 4)까지의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신청한 제품에 대하여 적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마.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항의 변경

1) 제조업자등은 적합성평가가 적합하게 완료된 제품이나 그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의 충족 여부 또는 발급된 적합증명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으면 적합성평가기관에 그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적합성평가기관은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발급한 적합증명서에 대하여 유효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결과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

바. 적합성평가의 표시

1) 제조업자등은 적합성평가기관으로부터 신청한 제품의 적합성평가가 적합하게 완료되었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인증 등 해당 적합성평가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제조업자등은 해당 제품의 적합성평가가 적합하게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출고되는 모든 생산로트에 대하여 적합성평가기관에 의한 출고 전 시험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출고 전 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났음이 확인된 로트에만 인증 등 해당 적합성평가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사. 사후관리

적합성평가기관에서 실시하는 적합성평가의 사후관리는 없으나, 제품이 시장에서 혼란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의 소관 행정기관 또는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조사활동 등의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8. 에이치(H) 심사유형

가. 개요

적합성평가기관이 공장의 제조 및 품질관리 능력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적절한 품질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공장 심사를 하여 적합성평가 결과를 도출하며, 제품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한 후에 공장심사를 통하여 사후관리를 하는 심사유형이다.

나. 적합성평가의 방법

공장심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 1) 공장의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전체심사
- 2) 공장의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일부심사

다. 적합성평가의 신청

제조업자등은 적합성평가기관에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적합성평가에 필요한 신청 서류를 제출한다.

라. 적합성평가기관의 업무

- 1) 적합성평가기관은 제조업자등이 신청한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 서류의 반려 여부나 보완 필요성 여부 등을 먼저 검토한다.
- 2) 적합성평가기관은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제조 및 품질관리 능력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적절한 품질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공장심사를 한다.
 - 가) 공장심사에는 제조업자등의 공장에 대한 현장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 나) 제조업자등은 공장심사를 하기 전에 적합성평가기관의 요구에 따라 공장심사에 필요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적합성평가기관은 1) 및 2)의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신청한 제품에 대하여 적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마.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항의 변경

- 1) 제조업자등은 적합성평가가 적합하게 완료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의 충족 여부 또는 발급된 적합증명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으면 적합성평가기관에 그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2) 적합성평가기관은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발급한 적합증명서에 대하여 유효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결과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

바. 적합성평가의 표시

제조업자등은 적합성평가기관으로부터 신청한 제품의 적합성평가가 적합하게 완료되었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인증 등 해당 적합성평가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사. 사후관리

- 1) 적합성평가기관은 제품에 대한 적합성평가가 적합하게 완료된 후에 공장심사를 통하여 사후관리를 한다.
- 2) 공장심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 가) 공장의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전체심사
 - 나) 공장의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일부심사
- 3) 적합성평가기관은 적합성평가가 적합하게 완료된 제품이 사후관리를 통하여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조업자등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고, 그 조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결과를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적합성평가가 적합하게 완료된 제품이 시장에서 혼란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의 소관 행정기관 또는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조사활동 등의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9. 아이(I) 심사유형

제품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신규로 정하거나 기존의 적합성평가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유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심사유형으로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유형의 일부 내용을 포함하거나 새로운 적합성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을 적용하여 적합성평가의 결과를 도출 또는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15.6.30.>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및 방법(제15조의6제1항 관련)

1. 표시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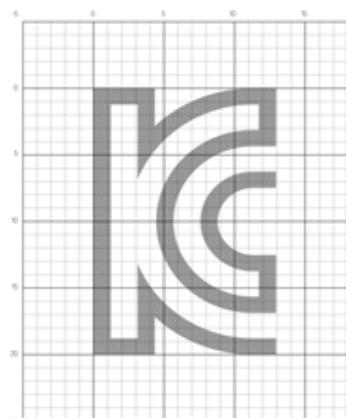
가. 국가통합인증마크의 기본도안 모형



나. 도안 요령 및 색채

1) 도안 요령

가) 국가통합인증마크의 가로 및 세로 비율은 아래의 격자눈금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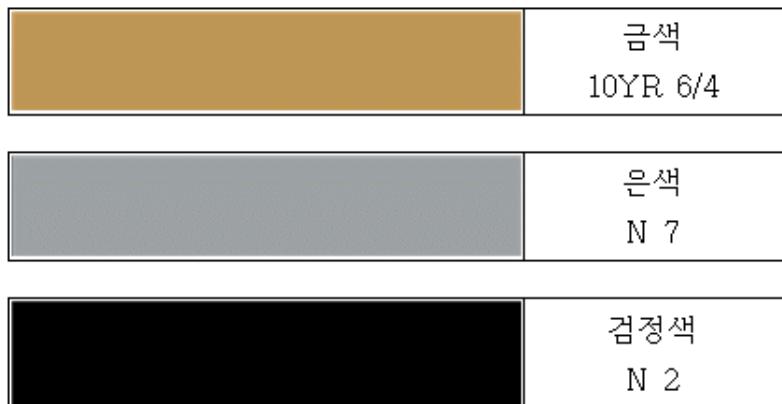
나)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크기는 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인증마크의 세로 높이는 5mm 미만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저장장치 등의 극소형 제품 또는 검정증인(檢定證印)[압인(押印) · 타인(打印) · 각인(刻印) 등을 말한다]을 사용하는 제품은 제품의 크기에 따라 국가통합인증마크의 세로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색채

가) 국가통합인증마크 기본모형의 색채는 아래와 같은 남색(KS A 0062에 따른 5PB 2/8 색채)을 사용한다.



나) 특수한 효과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금색(KS A 0062에 따른 10YR 6/4 색채)과 은색(KS A 0062에 따른 N 7 색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남색, 금색 또는 은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검정색(KS A 0062에 따른 N 2 색채)을 사용할 수 있다.



※ 참고: 금색과 은색에는 반짝이는 효과를 넣어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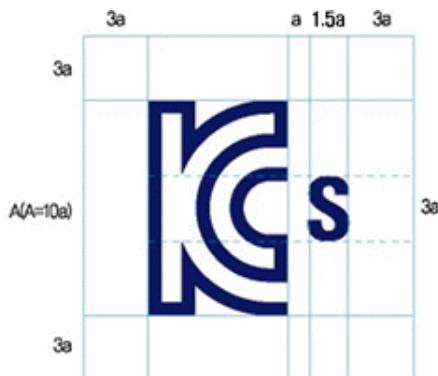
다. 국가통합인증마크의 부기도안 모형 및 도안 요령

1) 국가통합인증마크의 부기도안 모형



※ 참고

1. 부기 글자는 인증등의 분야별로 구분하여 S, Q, E, H로 한다.
 2. S는 안전 분야, Q는 품질 분야, E는 환경 분야, H는 보건 분야의 국가통합인증마크에 각각 덧붙여 넣는다.
- 2) 도안 요령



2. 표시방법

- 가. 국가통합인증마크는 해당 제품의 표면에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나. 제품의 표면에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으로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제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제품의 경우에는 그 제품의 최소 포장마다 표시할 수 있다.